

# 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0.01.06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선임급

소속 : 신사업개발처

## [상담 내용]

기업 임원 승진 축하를 위해 난을 선물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?

## [상담 결과]

-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금지) 제2항에서 “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된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“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”은 제공이 가능합니다.  
다만, 그 가액범위가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(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)으로 한정됩니다.
- 만일, 우리회사 소관 위원회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) 소속 국회의원의 조사인 경우에는 밀접한 직무 이해관계가 인정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부조해야 할 것입니다.

[확 인] 2020.01.06

윤리문화팀장 정상인

# 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0.02.20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선임급

소속 : 원)기계배관기술실

## [상담 내용]

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?

## [상담 결과]

-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.  
배우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.
- 다만,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등이 제공된 경우,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배우자인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0.02.20

윤리문화팀장 정상인

## 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0.03.02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기획처

### [상담 내용]

결혼 후 소속부서 직원에게 떡을 돌려도 될까요?

### [상담 결과]

-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금지) 제2항에서 “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된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“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”은 제공이 가능합니다.  
선물의 경우 가액범위는 5만원 이하(다만, 농수산물,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)으로 한정됩니다.
- 이에, 가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0.03.02

윤리문화팀장 정상인

## 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0.04.08

[상담유형]

방문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주임급

소속 : 혁신성장실

### [상담 내용]

음식물을 접대하는 경우, 음식물 가액에 부가세는 포함되는건가요?

### [상담 결과]

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

음식물 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[확 인] 2020.04.08

윤리문화팀장 정상인

# 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0.05.15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원급

소속 : 미래전략연구소

## [상담 내용]

행사에서 음식물 제공과 기념품 지급을 동시 하려는데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
"

-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“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”은 제공이 가능합니다.
- 음식물의 상한액은 "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범위(별표1)"에 따라 3만원이며,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(농수산물의 경우, 10만원)까지만, 동시 제공 시 그 가액은 합산하고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합니다.  
그리하여 합산 5만원 범위 내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서물에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0.05.15

윤리문화팀장 정상인

# 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0.06.10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원급

소속 : 원자력사업관리실

## [상담 내용]

임직원이 학회 참석시 학회에서 참석자에게  
일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?

## [상담 결과]

- 청탁금지법상 문제는 없습니다.  
우리회사 임직원에게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닌 참석자에게 일괄  
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합니다.
- 다만 제공시설이 사회상규상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 
제공받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.

[확 인] 2020.06.10

윤리문화팀장 정상인